

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센터는 호서대학교 부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며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 조 (목적) 본 센터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과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서로 협동하여 기업에 관련된 기술개발연구 및 기업경영 자문을 수행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내의 각종 센터를 도와서 대학의 연구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 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동연구개발
2. 산·학·연간의 협력체제의 강화
3. 중소기업 연구단지 조성
4. 기술정보 교류
5.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
6. 단기교육 및 재훈련
7. 기업경영 자문
8. 각종 세미나, 워크샵, 심포지엄 개최
9. 국제연구 협력
10. 수탁연구사업(정부, 관, 기타 공공기관)
11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 4 조 (센터 요원) ①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, 기능 및 행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센터 요원의 자격, 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5 조 (조직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기술개발 연구부
2. 기초과학 연구부
3. 경영지원 연구부

제 6 조 (임원) ① 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소장 : 1명
2. 명예소장 : 약간 명
3. 부소장 : 1명
4. 분과 부서장 : 분과 당 1명

② 소장, 명예소장,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인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각 부서의 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7 조 (임원의 직무) ①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, 인사, 경리 기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의 임무를 관장한다.

제 3 장 자 문 위 원 회

제 8 조 (자문위원회) ① 센터의 주요정책 및 사업성과 사항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4 장 운 영 위 원 회

제 9 조 (구성 및 회의)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, 총장이 위촉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조직, 운영체제 및 기본계획 수립
2. 연구방향 설정
3.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조정
4. 센터운영 규정
5. 예산 및 결산
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 장 재 정

제 11 조 (재원) 센터의 재원은 각종 지원금, 연구비, 용역비 또는 이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 12 조 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13 조 (예산집행) 예산의 집행은 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, 년1회 총장의 감사를 받는다.

제 14 조 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28일에 종료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